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

탐사보도 콘테스트

수상작 모음집



임금

"청년들이 희망하는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그것의 기준 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거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 본인의 주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평가는?"

교육

"자사고 폐지에 관해 본인의 주변에서는 어떤 반응이며 본인의 평가는?"

I Round : 임금

**“청년들이 희망하는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그 기준 혹은
이유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편의점 알바, 정상인가요?

- 법적 최저임금은 올라도 편의점 알바노동자 최저임금은 요지부동...
- “편의점 최저시급은 다 그래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시한 2019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 그리고 올해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인상된 시급 8,590원을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시 179만 5,310원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급격히 오르는 최저임금에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영세업자들은 전년 대비 10%나 오른 최저임금과 더불어 오르는 야간수당,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 중,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아래 전편협)는 이처럼 최저임금이 더 오르게 된다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맞춰주기가 어려워져 범법자가 된다면 전국의 7만 개의 편의점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엄포를 놓은 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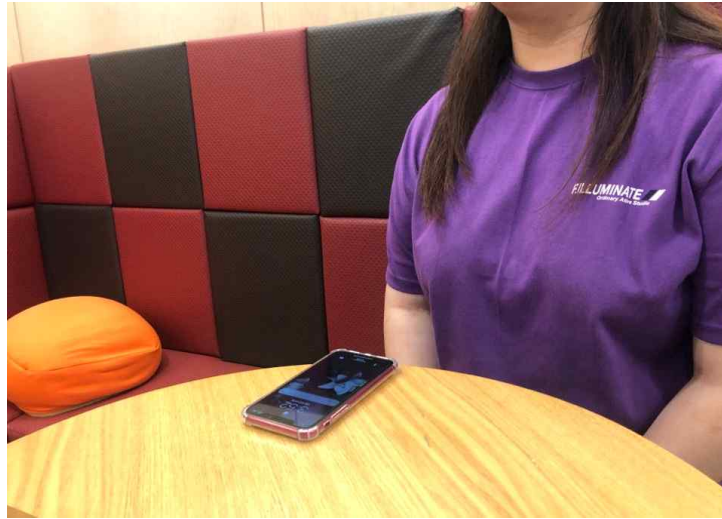
전편협은 지난해 7월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결정하였다. 전체회의에서 편의점 점주들은 월 1회 공동휴업, 올해부터 심야할증 도입, 종량제 봉투와 교통카드 충전 결제 시 높은 카드 수수료가 발생 시 카드결제 거부 방안을 논의 하였다. 또한 치솟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편의점 내에 호소문이나 플랜카드를 걸어 놓는 방안도 추진하였다. 노동자 고용에 관한 경우에는 15시간 일할 시에 주휴수당을 챙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한 두 명의 노동자에서 여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쪼개기 알바’가 다반사이다. 이에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알바 시간이 적어 월급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아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하는 이른바 ‘메뚜기 알바’도 나타나고 있다.

과연 최저임금 때문에 힘든가?

그렇다면 편의점 노동자들은 법적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알바노동자들 사이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알바의 시작’이라고 한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학생 신분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겪는 업종이다. 여러 가지 이유 중 공통적으로 답하는 하나는 바로 ‘경력을 따로 필요로 하지 않아서’이다. 다른 업종인 카페 아르바이트, 서빙 아르바이트는 경력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알바공고 사이트에서도 경력자를 우대한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아르바이트의 첫 시작점에서의 편의점 알바 노동자들은 과연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였을까? 편의점은 지금처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기 전에도 법적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알바노조가 2017년 10월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노동자 4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로는 응답자의 55%, 즉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을 하였다. 또한 92%의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해주는 편의점은 극히 드물었다.



9개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던 안모(23)씨와의 인터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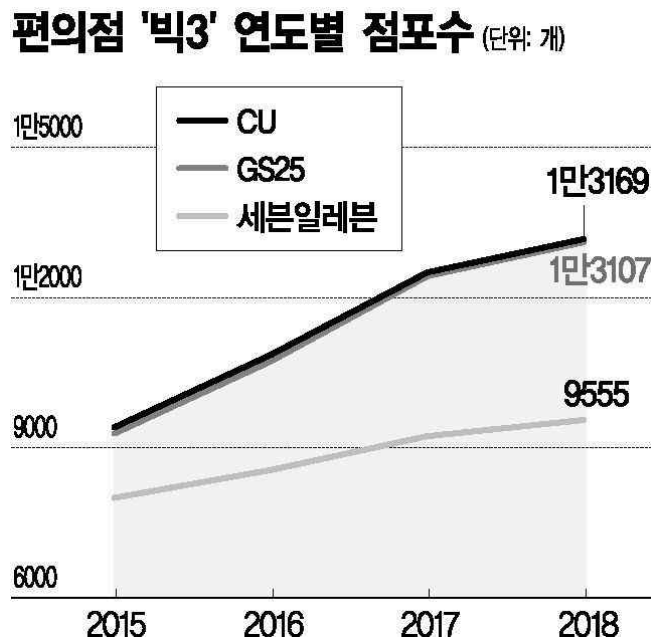
2017년 당시 대구에서 편의점 알바노동자였던 안모(23)씨는 법적 최저시급 6,470원에 미치지 못하는 5,500원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다. 구인광고에 최저시급은 어떻게 공시되어 있었느냐는 질문에 ‘협의를 후 조정’이라고 답하였다. 면접을 봤을 때 최저시급 언급에 대해서는 “편의점 점주님이 최저시급이 너무 높고, 동네에 손님이 부족해 최저를 다 줄 수 없다. 몇 개월 근무를 하고 나면 500원 인상을 해주겠다.”라며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못했던 이유는 “신고를 할 시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였다. 이에 덧붙여서 편의점 가맹점주가 하는 말은 “이 지역 고용주들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알바생의 정보를 공유한다.”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반면, 2018년 대구에서 5개월 가량 근무했던 편의점 알바노동자 최모(22)씨는 “구인광고에는 법적 최저시급 7,530원이라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최저시급은 6500원이었다.”라며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다르게 적혀있던 최저시급에 대해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편의점 가맹점주는 “편의점 최저시급은 다 그래요.. 여기만 아니라..”라며 오히려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먹이사슬의 끝은 힘 없는 알바 노동자

‘갑’의 횡포의 피해는 고스란히 알바노동자에게..

사실, ‘편의점 가맹점주가 힘들어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치솟는 최저임금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4대 편의점 본사 및 가맹점의 현황에 따르면 편의점 본사의 매출액은 2008년 6조원 대에서 2016년 20조 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의 편의점 평균 매출은 5억 4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4.2% 정도에 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나날이 증가하는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임대료 상승, 그리고 무차별적인 가맹점확대로 인해 언제 편의점이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8일 편의점 점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가맹점주들은 “편의점 문제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점포 확대 등 비합리적인 사업운영 체계에 있다”라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에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250m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거리 제한을 두었지만 이 제한은 같은 브랜드의 점포에서만 적용이 된다. 그러

므로 다른 브랜드의 입점이 들어서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듯이 한 골목 안에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현재는 국내에 3만여 개가 넘는 편의점이 들어서 있다.

두 번째로는 본사와 편의점 가맹점과의 수익 분배의 문제이다. 보통 편의점들은 본사가 매출총이익에서 35% 정도를 가져간다고 한다. 35%의 금액을 본사에 보내주고 알바 노동자들의 인건비, 임대료, 전기세와 같은 관리비가 빠져나가고 나면 실은 점주의 손에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편의점 점주들은 본사에 항의할 수 없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 알바들의 노동시간을 쪼개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적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을 놓고 싸워야 하는 것은 알바노동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먹이사슬의 최하위인 노동자들이 아닌 옳지 않은 불공정한 계약을 하고 있는 본사에 대해 칼날을 겨누어야 한다. 편의점 업계의 이러한 해결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편의점협회는 정부와 가맹사업본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편의점 점주들의 매출 대비 영업이익은 상승할 것이며 따라 알바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지는 인건비 또한 상승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최저임금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앞서 편의점 알바노동자인 최모(22)양은 희망하는 최저임금은 무엇이나는 질문에 “희망하는 특정 금액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법적 최저임금만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2019. 9. 7.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 신윤미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 독인가 약인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 34조와 제 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당시 경제 상황이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에 힘들다는 판단으로 이 규정이 시행되지 않았다.

[헌법] 제32조 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의 근거 규정에 의거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 공포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심의절차 및 결정 과정은 아래 그림을 따른다.



이렇게 산정된 최저시급은 원칙적으로 보자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지역별, 업종별로 노동력이 다르고 고용 형태 또한 세분화되어 있어서 근로자의 능력 차이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고 모든 근로 노동자에게 획일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제공한다면 오히려 능력별 취약계층의 근로 노동자에게 고용기회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기 위해 대다수 국가에서는 차등 최저임금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 최저임금으로 운용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을 매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노동 근로자 측은 너무 낮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업 측면에서 지불 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범위의 금액이라는 주장을 펼쳐 항상 상 반된 상황을 초래한다. 이는 노동 근로자는 가능한 많은 임금을 받길

원하고 기업 측에서는 적은 임금으로 고용하기를 원하는 점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최저임금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라는 의견도 있다.

여기서 불투명이란 근로자가 얼마를 받는지, CEO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의 총액은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의 산정 임금 범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좁기 때문인데 임금총액과 인건비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최저임금은 모든 기업체 노동자 통상임금 평균금액의 70%내외에 해당하는 임금액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이 임금총액과 같은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최저임금제의 도입으로 인해 저임금수준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복지국가의 선행조건을 만족시키게 된 것은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으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면의 기여 그 이면에는 업종 간의 특수성, 지역 간 임금 격차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모순점도 표출되었다. 최저임금제 도입을 통해 어려움을 겪게 된 중소기업들이 내 세우는 문제점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정권의 시작 전부터 많은 부분이 관심을 끌었어도 대학생으로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최저시급 인상 공약이다. 처음 최저시급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5000원도 안되던 최저시급은 공약으로나마 만원이라는 체감을 접했을 때는 예전과 비교해서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에 발맞춰 최저시급이 오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란 생각과 아직은 최저시급을 주는 것보단 받아야하는 입장에서 또한 후에 월급을 받게 되는 상황의 월급 산정 방식 또한 최저시급을 기초로 계산한다는 것을 알고 급격히 올라버린 최근의 인상 폭이 반가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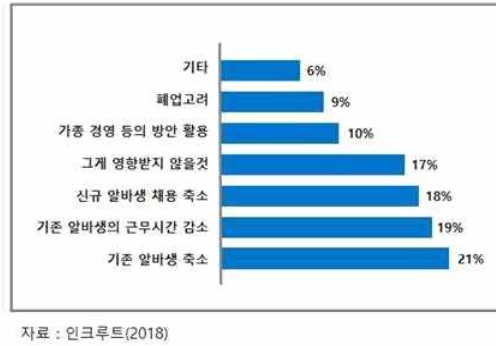
하지만 이러한 상승을 반가워만 할 수는 없는데 아래 그래프로 살펴보자면 다음 정리된 현황표와 같다.

<표1-1> 우리나라 최저임금 현황

(단위 : 원, %)

적용년도	시간급	일급 (8시간 기준)	월급 (209시간 기준)	인상액 (인상백분율)
'18.1.1 ~ '18.12.31	7,530	60,240	1,573,770	1,060(16.4)
'17.1.1 ~ '17.12.31	6,470	51,760	1,352,230	440(7.3)
'16.1.1 ~ '16.12.31	6,030	48,240	1,260,270	450(8.1)
'15.1.1 ~ '15.12.31	5,580	44,640	1,166,220	370(7.1)
'14.1.1 ~ '14.12.31	5,210	41,680	1,088,890	350(7.2)
'13.1.1 ~ '13.12.31	4,860	38,880	1,015,740	280(6.1)
'12.1.1 ~ '12.12.31	4,580	36,640	957,220	260(6.0)
'11.1.1 ~ '11.12.31	4,320	34,560	902,880	210(5.1)
'10.1.1 ~ '10.12.31	4,110	32,880	858,990	110(2.75)
'09.1.1 ~ '09.12.31	4,000	32,000	836,000	230(6.1)
'08.1.1 ~ '08.12.31	3,770	30,160	787,930	290(8.3)
'07.1.1 ~ '07.12.31	3,480	27,840	727,320	380(12.3)
'05.9 ~ '06.12	3,100	24,800	647,900	260(9.2)
'04.9 ~ '05.8	2,840	22,720	593,560	330(13.1)
'03.9 ~ '04.8	2,510	20,080	524,590	235(10.3)
'02.9 ~ '03.8	2,275	18,200	475,475	175(8.3)
'01.9 ~ '02.8	2,100	16,800	438,900	235(12.6)
'00.9 ~ '01.8	1,865	14,920	389,785	265(16.6)
'99.9 ~ '00.8	1,600	12,800	334,400	75(4.9)
'98.9 ~ '99.8	1,525	12,200	318,725	40(2.7)
'97.9 ~ '98.8	1,485	11,880	310,365	85(6.1)
'96.9 ~ '97.8	1,400	11,200	292,600	125(9.8)
'95.9 ~ '96.8	1,275	10,200	266,475	105(8.97)
'94.9 ~ '95.8	1,170	9,360	244,530	85(7.8)
'94.(1~8)	1,085	8,680	226,765	80(7.96)
'93	1,005	8,040	210,045	80(8.6)
'92	925	7,400	193,325	105(12.8)
'91	820	6,560	171,380	130(18.8)
'90	690	5,520	144,210	90(15.0)
'89	600	4,800	125,400	1그룹137.5 (29.7) 2그룹112.5 (23.7)
'88	1그룹 ¹⁰⁾ 462.50 2그룹 ¹¹⁾ 487.50	3,700	96,662.50	
		3,900	101,887.50	

참조 : 최저임금 위원회(2018) <http://www.minimumwage.go.kr/>



2018년 인상 폭은 최저시급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89년에 적용되어 올해로 30년 중 눈에 띄는 변화이다. 인상 폭이 가장 낮았던 98년에는 IMF라는 직격탄으로 2.7의 상승을 기록하였다.

높은 인상률로는 올해가 역대 2번째로 큰 인상 폭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 개념이 도입된 89년 이후 다음 해인 90년 91년 각각 15와 18.8의 인상 폭은 당시의 경제 성장률과 처음 도입 때의 미흡한 최저임금 산정 방식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여졌을지라도 현재의 경제 성장률 대비 현재의 최저시급 인상률은 급격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에 반증이라도 하듯 시장에서 최저시급과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아르바이트 시장에서는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주휴수당 교통비 야간수당 등 최저시급 이외에도 지급해야 할 비용이 많은 입장에 있다. 법적으로 산정된 기준인 만큼 지켜야 하는 압박 속에 택한 방법은 인원 감축이다.

CGV의 경우 이전에 5명이 진행하던 오픈 시간은 3명으로 줄어들었으며 가장 바쁜 시간을 제외한 오전과 야간의 경우는 경력직 위주의 필요한 인원만이 배치되었다.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찾기가 어려워진 만큼 들어간다 하더라도 법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만큼만 고용하여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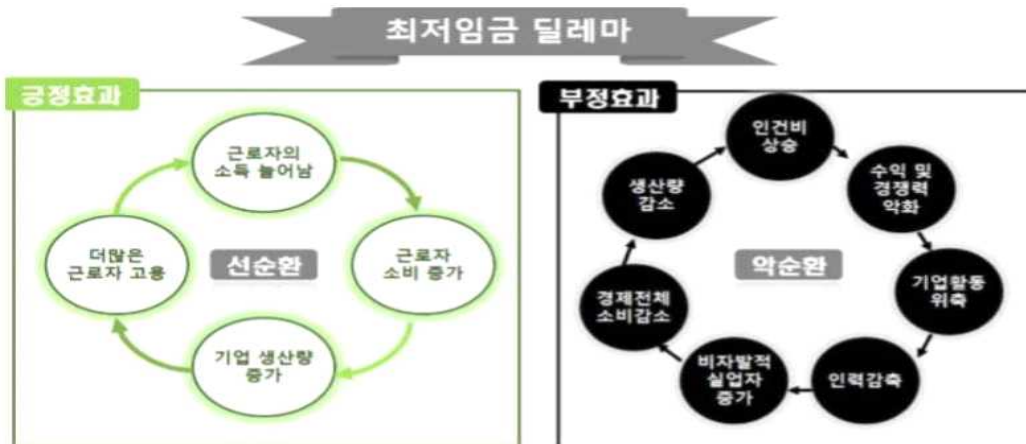
소상공인의 경우는 더욱 열악하여 일자리가 줄어들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힘들어졌거나 각종 수당이나 월급제로 인해 최저시급보다 낮은 조건으로 채용하려는 등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었으며 새로운 일자리 또한 인원 감축이나 인상 폭만큼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란 쉽지 않은 형태로 변해버렸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려던 분수효과란 최저시급의 인상을 통해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늘려 소비를 증가를 통한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더 많은 고용을 추구하게 된다는 소득 주도형 분수효과를 계획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간과해서 빠진 부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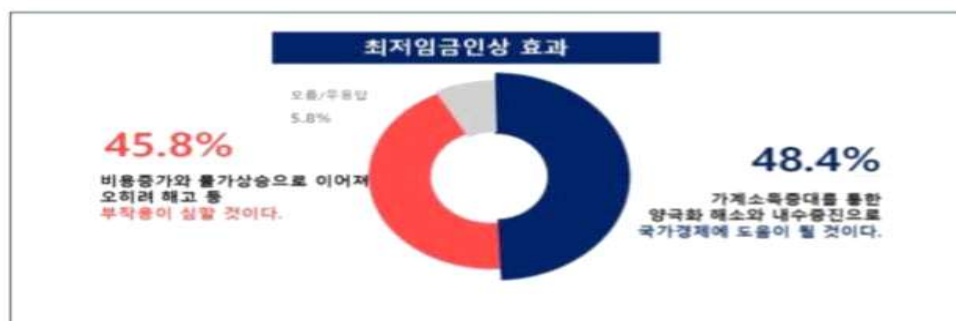
근로자의 소득을 어느 정도 만큼 늘려야 사회적 충격 없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인가이다.

이번 정부 공약이었던 시급 만 원 달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충격에 조사나 연구는 없이 선전효과에서의 공약의 무리한 실천은 경제침체로 이어지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현재의 경제침체가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 때문은 아니지만, 내수 경제의 성장 부진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현재의 시장에서 창출되는 고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동자의 교육과 시장성의 통한 생산력 증대를 통해 기업의 선순환적 수익 증대라는 시간과 사회적 합의 후에 시급인상으로 이어졌다면 시장에서의 충격 또한 완화되어 고용자와 고용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시급의 인상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저임금인상, '국가경제 도움' 48.4% VS '해고 등 부작용 심화' 45.8%



2019. 9. 8.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 이현종

논란의 최저임금 인상, 반으로 나뉘는 의견

- 음식점주 “알바생들을 우리 자식처럼 생각한다면은 최저시급 올리는 거는 인정해야지.”
- 마트 점주 “여기서 오래 했는데 장사를 접을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불경기인데…”

지난 7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여러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20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저임금에 대해 20대 위주로 대학생기자단은 9월 6일부터 7일까지 총 91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절반 이상(53.3%)이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설문대상은 □20대 초반(20~23세)(50.5%) □20대 중반(24~26세)(38.5%) □20대 후반(27~29세)(9.9%)으로 진행하였다.

설문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냐는 것에 대해 □예(85.7%) □아니오(14.3%) 순으로 답했다. 2019년 아르바이트 구직경험에 대해서는 □예(65.9%) □아니오(34.1%) 순으로 답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 구직 활동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주 1~2회 혹은 1~3시간 짜리 ‘시간쪼개기’ 아르바이트 심화(36.7%) □기업의 아르바이트 구직 저조(31.7%) □아르바이트 구직자 간의 경쟁률 심화(28.3%) 순으로 답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만족도로 최저임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에 대해 □적당하다(66.7%) □너무 많다(16.7%) □너무 적다(15.4%) 순으로 답했다.

최저임금의 적정선으로 적정선이 어느 정도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8350원 ~9000원)(30.7%) □현재(8350원)(20.9%) □9000원~10000원(24.2%) 순으로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으로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다(53.8%) □부정적이다(46.2%) 순으로 답했다.

이들 중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물가 상승 때문(63.3%) □경기 안정에 대한 기대 때문(20.4%) □아르바이트 업무 강도가 높기 때문(14.3%) 순으로 답했다.

부정적이다 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 이유 때문(32.7%) □대량 해고의 위협 등 고용 불안정 우려 때문(30.6%) □인건비 급상승 때문(24.5%) 순으로 답했다.

고용주들의 반응 또한 나뉘었다. 수원 인계동에서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강씨(5*세)는 30년 동안 사무실을 운영해왔다. 강씨는 “내 수입을 줄이더라도 줄 것은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다들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되니까.”라고 답했다.

수원 인계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씨(4*세)는 “알바생들을 우리 자식처럼 생각한다면은 최저시급 올리는 거는 인정해야지. 이번에 교통비도 오른다며? 근데 내년 최저시급이 200원 오른댔나? 어떻게 살아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식들도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먹고 살거 아니에요.”라며 최저시급이 인상된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에 반해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고용주들도 있었다.

수원 매탄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씨(4*세), “월급이랑 같이 물가도 오르니까 가게 유지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생기죠. 이렇게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미용용품들 가격도 같이 오르더라구요.”

수원 우만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씨(5*세), “아무래도 매출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게 된 게 아깝기는 해요. 그래서 알바를 잘 안 쓰려고 해요. ‘최저 시급 받는건 일 최저로 하란 뜻이다’, 이런 말 하는 애도 봤어요. 다 챙겨 받으려면 알바 못 구할수도 있어요. 나도 살아야지. 자영업이 살아야 알바도 있지.”

수원 인계동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김씨(3*세), “알바 시급 챙겨주는거, 주휴수당 주는거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알바를 하루에 2시간만 쓰기로 했어요. 정부 지원 같은 게 있었음 좋겠어요. 우리는 프랜차이즈인데 임대료 내지, 가맹금 내지, 로열티도 있고. 차라리 이런 프랜차이즈 기업에다가 이런걸 좀 낮추라고 하면은 최저시급 챙겨주면서 알바를 좀 고용할 수가 있을텐데. 이거는 완전 을들의 싸움이에요. 갑들은 계속 돈 버는데. 똑같이.”

수원 원천동에서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박씨(6*세), “내가 포터를 타고 야채를 옮기는데요. 농부들도 좀 힘들 거 같지만서도 갖다 파는 나도 너무 힘들어. 잠깐 청년들 썼다가 시급 다 쳐주면 남는 게 없어요. 당근, 양파 팔아서 얼마 남겠어요. 그런데 최저시급은 오르지...”

수원 매탄동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이씨(6*세), “임대료 내기도 벅차서 알바를 못써

요. 예전에는 아는 집 자식들 데려다 알바도 시켜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안 되니까. 물가 오르니까 물건 떴오는 것도 비싸지고 임대료도 오르고... 여기서 오래 했는데 장사를 접을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불경기인데..."라며 인터뷰를 진행한 7명의 고용주 중에 5명이 최저시급의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2019. 9. 8.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 강소진 최보영 김하은

‘진짜’ 청년들의 최저임금

- ‘진짜’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이란?

현재 청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관심을 가지게 하는 사회 이슈라고 하면 최저임금을 빼놓을 수 없다. 최저임금에 따라 청년들은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피부로 와 닿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정당은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명목으로 청년 단체, 청년 위원회 등을 만들어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막상 그 단체의 구성원들을 알아보면 진짜 청년들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당헌당규에 따라 청년의 기준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총 4명의 실제 청년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았다. 첫 번째로 만난 청년은 현재 국내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22세 ‘윤한별’씨였다. 윤한별 씨는 최저임금은 현상유지(8,350원) 되어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다음은 윤한별 씨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기 자: 안녕하세요 한별씨, 최저임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자: 네 일단 만약 가능하다면 저는 최저임금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기 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응답자: 2018년 기준 8350원의 최저임금이 정해졌을 때도 자영업자들이 알바생이나 직원 고용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고충을 겪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또 인상한다면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진정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의미이니 편 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응답자: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평범한 직장인들 월급 받으면서 일하다가 퇴직하고 나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요식업입니다. 현재 자영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요식업이구요. 요식업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다가 현재 학업 때문에 잠깐

그만둔 상태인데 안 그래도 부족한 돈에 고용하는 데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식업 사장들 입장에서 그나마 진입장벽이 낮은 요식업에게 또 하나의 문턱을 만듦으로써, 결국에 피해를 보는 건 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은 최저임금 조금 오른다고 걱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저임금에 대해 현상 유지가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기자: 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일본에서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22세 이태규 씨에게 의견을 여쭙보았다. 이태규 씨는 21세까지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준비하며 거주하다가 올해 일본으로 떠났다. 이태규 씨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볼 때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태규 씨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기 자: 안녕하세요 태규씨, 최저임금은 얼마가 적당한지와 그 이유에 대해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응답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최저임금을 7500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소비가 줄고, 자영업자들은 더더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현 정부의 공약대로 1만 원까지 인상한다면, 자영업자들의 고용 기피 현상은 더욱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은 줄고 고용을 해야 임금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데 소비를 위한 소비촉진제가 없으니 전체적으로 자본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 자: 결국 대기업의 횡포나 재벌 독과점과 관련없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응답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고용이 너무 잘 되어서 면접만 보면 합격한다는 말이 나오는 수준인데,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경제수준에 발맞추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포퓰리즘(populism :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 정책을 통한 표심 얻기에만 급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 자: 네 알겠습니다. 결국 1만원 최저임금은 물론이고 오히려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었군요.

세 번째로는 현재 우리나라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22세 박수민 씨를 인터뷰 하였다. 수민 씨는 성인이 되자마자 시작한 아르바이트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8350원 이전 수준인 7530원일 때가 가장 적당한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수민 씨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기 자: 안녕하세요 수민씨, 최저임금으로 얼마가 적당할지 또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응답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최저임금이 이전 수준인 7530원이 가장 적당한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 자: 그 이유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응답자: 일단 아르바이트생들이 힘들어지죠.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고용량을 줄일테고, 그에 따라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해야 할 일의 양이 훨씬 늘어나게 되요.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5명이 하던 일을 3명이 해야 하게 되는거죠. 그럼 당연히 노동의 강도는 늘어나요.

기 자: 네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응답자: 그럼요, 솔직히 아르바이트를 몸소 경험하는 저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최저임금을 나라에서 올려놓고, 사장님들은 '너희 최저임금 올랐으니까 당연히 음식값도 올라야지'와 같은 자세로 나오시니까 좀 그렇죠. 솔직히 저희가 알바를 평생 할 것도 아니고, 학생 시절에 몇 년 하는건데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오르는 것을 원치는 않아요.

기 자: 네 솔직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익명을 요청한 한 대학생을 인터뷰하였다. 그는 최저임금 1만원이 적당하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그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기 자: 안녕하세요 xxx씨, 제가 여쭙볼 문제는 '최저임금'에 대해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그 이유입니다.

응답자: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는 지금도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르바이트생들 입장에서는 많이 줄수록

좋은 것이 최저임금이죠. 물론 경쟁률이 더 세지고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들겠지만 그건 본인들의 능력이니깐요. 사실 최저임금 1만원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생각이 없고 이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청년들의 상황에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 까지 바라는 건 사치라고 생각해요.

기 자: 네 간단하고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처럼 4명의 청년 중 3명은 최저임금에 관해 현상유지를 주장하거나 오히려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나머지 한명은 최저임금 1만원이 가장 바람직한 목표라고 답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 조사를 하고,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권이 들어서고, 노동자들의 파업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청년들의 입장을 너무나도 묵살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에 대한 정책을 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한다. 4명의 청년이 내놓은 입장으로는 모든 대한민국의 청년을 대변할 수 없는 게 당연한 한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명 한 명의 구체적인 입장과 그들이 지금 아르바이트를 몸소 겪는, 진정한 청년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 기사가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2019. 9. 8.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 나찬솔

최저임금에 대하여

- 최저임금 관련 대학가 인터뷰 영상이다.
- 영상 링크 주소는 <https://youtu.be/zluPU9dvUGg> 이다.

SCAN ME



2019. 9. 8.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 김경민

최저임금에 대한 인터뷰

- 최저임금에 대한 두 여학생의 무편집 인터뷰 영상이다.
- 영상 링크 주소는 <https://youtu.be/RBBETBLFKDY> 이다.
- 두 번째 영상 링크 주소는 <https://youtu.be/WIA60ATY3Sk> 이다.



2019. 9. 8.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 성장헌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